

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연 병 호

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김양희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4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2000년 제정·운영되고 있는 「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지역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「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」로 통·폐합하여 입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,
- 관광산업의 국제화와 전문화에 능동적 대응하고 외국인 관광객 및 외국 자본 유치 증진을 통한 충북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치 성공 보상금을 도입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조례의 제명
 - 조례의 제명을 “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”로 명확히 함.

-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수행하는 업무를 정함(안 제10조 및 부칙 제2조)
 - 관광안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고,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도지사가 관광안내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.
 - 관광안내소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서 규정함에 따라 「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폐지함.

-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국 관광기업·자본 유치 증진을 위해 유치 성공 보상금제 도입(안 제11조)
 - 충북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치 성공 보상금을 도입함.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조례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“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”로 변경하고,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고, 「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폐지하도록 하였으며,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국 관광기업·자본유치 증진을 위해 유치성공 보상금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